

창원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합10338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

담당변호사 박규택, 김운섭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성룡

피 고 유한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7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080,000,000원 및 그중 37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10.부터 2024. 12. 1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2. 3. 3.부터 2024. 12. 1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2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2. 13.부터 2024. 1. 12.까지는 월 4.8%의, 그 다음날부터 2024. 12. 1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36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4. 1. 13.부터 2024. 12. 1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는 2021. 12. 13.경 충남 태안군 C 일원의 광물 및 토석 채취와 전북 부안군 D 일원의 E 공사를 공동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하고,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동진행하기로 한 사업을 '이 사건 공동사업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장비(이하 '이 사건 장비'라 한다)를 우선 제공하되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제공한 자금의 원금 상당액을 반환함과 아울러 그 자금에 대하여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금융비용으로 지급하고,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합계 22,000,000원(= 크러셔 12,000,000원 + 페이로다 10,000,000)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장비명	규격	단위	수량	임대료(원)	장비가격(원)
크러셔(Crusher)	6048(600ton)	대	1	12,000,000	250,000,000
페이로다	버킷 5.0m³급	대	1	10,000,000	100,000,000

다.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1. 10. 1.경부터 2022. 3. 3.경까지 합계

470,000,000원{= 2021. 10. 1.경부터 2021. 12. 10.경까지 370,00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제1 투자금’이라 한다) + 2022. 3. 3.경 100,00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제2 투자금’이라 하고, 이 사건 제1 투자금과 통틀어 ‘이 사건 투자금’이라 한다)}을 지급하고, 2021. 12. 13.경 이 사건 장비를 제공하였다.

라.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원금 상당액도 반환하지 않았고,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.

마. 원고는 2022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이 사건 투자금 및 이 사건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,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.

바.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4. 1. 12.경 이 사건 장비 중 페이로다를 직접 반출해왔다. 이 사건 장비 중 크러셔는 피고가 제3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2024. 1. 13.을 기준으로 원고가 직접 반출하거나 피고로부터 그 원물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{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(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내용만 기재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,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,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실질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,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위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,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.)}, 갑 제3, 4, 7 내지 9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미지급 및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임대료 미지급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투자금 4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한 이 사건 장비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크러셔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, 나아가 ②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

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제공받은 날부터 이 사건 장비를 반환하거나 그 반환이 불능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(크러셔 월 12,000,000원, 페이로다 월 10,000,00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 중 크러셔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로서, 위 크러셔에 관한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상회복의무에 갈음한 전보배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위 크러셔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, 2021. 12.경 당시 위 크러셔의 시가 상당액은 250,000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불능 무렵에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.

나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, ① 1,080,000,000원(= 이 사건 제1 투자금 370,000,000원 + 이 사건 제2 투자금 100,000,000원 + 이 사건 장비 중 크러셔 전보배상금 250,000,000원 + 이 사건 장비 중 페이로다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날인 2021. 12. 13.부터 그 반환일인 2024. 1.

12.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360,000,000원(= 10,000,000원 × 36개월)} 및 그중 ㉠ 이 사건 제1 투자금 상당액인 37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 투자금의 마지막 지급일인 2021. 12. 10.부터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. 11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4. 12. 10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, ㉡ 이 사건 제2 투자금 상당액인 10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 투자금의 지급일인 2022. 3. 3.부터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. 11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4. 12. 10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, ㉢ 크러셔 전보배상금 상당액인 2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24. 1. 13.부터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. 11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4. 12. 10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, ㉣ 페이로다 임대료 상당액인 360,000,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. 1. 13.부터 이 사건 2024. 11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

부분 송달일인 2024. 12. 10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
나아가 ② 원고가 이 사건 장비 중 크러셔를 제공한 2021. 12. 13.부터 위 크러셔의 원물반환이
불가능하게 된 2024. 1. 12.까지 월 12,000,000원(= 250,000,000원 × 4.8%)의 비율로 계산한
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윤정, 판사 남승우, 판사 김나영